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2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일자(번호)	2021.06.08(2)	쪽 번 호	1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3 장 보험급여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법 36 조	아래 각 호의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법 40 조, 52~57 조, 60~67 조, 66~69 조, 71 조 및 72 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사도 법 36 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급여는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계약직)도 적용하며, 법 37 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요양급여 :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4 일 이상 요양/치유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 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 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해급여 :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5.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6.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 년이 지난 날 이후에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 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7.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8. 직업재활급여 :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자자 직업훈련, 직장적응훈련 등에 드는 비용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재해조사 및 보고 절차서 -요양급여신청서	
	업무상의 재해인정 기준	법 37 조 영 27 조~36 조	①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②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제 36 조(영)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 37 조제 2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 1 항제 3 호나목의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제 3 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상세한 내용은 뒷장의 (부표 1)과 같다.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2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일자(번호)	2021.06.08(2)	쪽 번 호	2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부표 1)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구 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법 37 조)	업무상 재해 상세 인정 기준(관련 시행령)
1. 업무상 사 고	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 27 조(영)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근로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나.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제 28 조(영)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②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삭제 : <2017. 10. 24.>)	제 29 조(영) 출퇴근 중의 사고 제 29 조 삭제 <2017. 12. 26.>
	라.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제 30 조(영)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마.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2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일자(번호)	2021.06.08(2)	쪽 번 호	3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구 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법 37 조)	업무상 재해 상세 인정 기준(관련 시행령)
1. 업무상 사 고	바.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 31 조(영)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 32 조(영) 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 33 조(영) 제 3 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 3 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 3 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2. 업무상 질 병	가. <u>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u>	제 34 조(영)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4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 포함)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2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일자(번호)	2021.06.08(2)	쪽 번 호	4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구 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법 37 조)	업무상 재해 상세 인정 기준(관련 시행령)
2. 업무상 질병	나.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 34 조(영)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 34 조제 3 항 관련) <개정 2021. 6. 8.> 항목은 아래와 같이 13 개 항목이며, 상세 내역은 [별표 3] 참조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4. 신경정신계 질병 5. 림프조혈기계 질병 6.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8. 간 질병 9.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3. 제 1 호부터 제 12 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 1 호부터 제 12 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 35 조(영) 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 37 조제 1 항제 3 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 35 조(영) 출퇴근 중의 사고 ② 법 제 37 조제 3 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 2 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12. 26.]